

『구미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향토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향토기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
 - 향토기업(본점 등록 20년 경과, 고용인원 30인 이상)이 공장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재산세 50% 감면 (안 제25조의2)

4. 참고사항

-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-1455(10. 5. 12)호 감면조례 허가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
 -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을 위해 향토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규정을 신설 하고자 행정안전부의 허가를 받아 개정하는 조례안 임

○ 주요내용은

- 구미시에서 본점 사업자 등록을 한지 20년이 경과하고, 상시고용인원 30인 이상인 향토기업이 공장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50%를 감면하는 내용임

○ 검토결과

- 본 조례안은 현행 지방세법령상 산업단지, 경제자유구역 등 특정 지구·지역에 위치한 기업에 대해서만 지방세를 감면 하였으나,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한 향토 기업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의 허가를 받아 지방세 감면규정을 신설코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